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291호
2. 발 의 자 : 박순규 의원
3. 발의일자 : 2020. 2. 5.
4. 회부일자 : 2020. 2. 12.

II 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운동장,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, 단체 등이 이용하도록 개방하고 있으나 타 지역 단체의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이 학교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, 장기 사용에 한하여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학교 소재 자치구 주민이 우선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III . 주요내용

- 개방된 학교시설물의 장기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이고 사용시간대가

접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함. (안 제5조제2항)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2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3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5일 박순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291호로 발의되어 2020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운동장,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자치구가 아닌 타 지역 단체가 장기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해당 학교의 학생 및 지역주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,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한 검토

-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방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현재 학교시설을 개방함에 있어 학교시설 장기 사용신청자가 같은 시간대에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학교장이 추천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의 지역주민 등이 타 자치구 주민의 장기사용에 밀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- 이는 점차 증가하는 체육활동 인구에 비해 체육시설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한 동 조례의 입법취지에도 부합

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.

- 따라서 동 조례는 학생 및 지역주민이 학교 시설을 사용할 경우 해당 학교 학생 및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나. 조문에 대한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물의 장기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이고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내 공립학교에 대한 시설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로 사용한 단체는 총 2,123개이며, 이 중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 이외의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는 125개로 전체의 5.9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
[표-1] 학교시설별 사용단체 현황¹⁾

시설구분	사용단체	해당 자치구 지역주민단체	타지역주민	
			단체	사용비율
운동장	959	933	26	2.7%
체육관 (다목적강당)	1043	958	85	8.1%
테니스장	100	96	4	4.0%
일반교실	2	0	2	100.0%
야구장	9	1	8	88.9%
기타	10	10	0	0.0%
합계	2,123	1,998	125	5.9%

1) 동 자료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시설사용료 현황을 기준으로 장기사용시 감면률(동 조례 제9조

- 이와 같이 타 자치구 주민이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비록 전체 사용자의 일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는 동 조례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 조례 제9조에서 이미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학교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자치구 주민들에게 우선적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,

동 조례안과 같이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해당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 지역주민에게 해당 학교의 우선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
- 다만 시설에 대한 우선 사용 대상이 되는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 단체가 실질적으로 해당 자치구 주민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자치구에 속하는 단체의 범위를 해당 자치구 주민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. (행정관리담당관-1817, 2020.2.13.)

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관계 법령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[시행 2018. 10. 16.] [법률 제15794호, 2018. 10. 16., 일부개정]

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. 다만,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.

④ 삭제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[시행 2020. 1. 3.] [대통령령 제29939호, 2019. 7. 2., 일부개정]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, 전세금의 산정,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·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.
-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-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,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.
-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.

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19. 12. 3.] [법률 제16672호, 2019. 12. 3., 일부개정]

제11조(학교시설 등의 이용)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, 공립·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.